◉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-0455호

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'행정절차법'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03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○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체육행사개최자의 체육행사 안전점검 방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추진

2. 주요내용

○ (안전 점검) 체육행사 개최 전부터 종료 시까지 체육행사 세부점검표를 사용한 안전점검 실시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나. 성명(기관・단체의 경우 기관・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- 일반우편 :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
- 전자우편 : ftw25@korea.kr
- 팩스 : 044-203-3490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(전화 044-203-3156, 팩스 044-203-349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